

#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9
----------	------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 1. 제안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아름답고 꽤적한 경관을 보전·향유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경관협정의 내용(안 제12조제2항)
- 나. 자문대상(안 제20조제1호)
- 다. 심의 및 자문기준(안 제21조)
- 라.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안 제25조)
- 마. 경관관리 체크리스트의 활용(안 제26조)
- 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안 제2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의 :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1. 9. 30 ~ 10. 20.)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충주시 조례 제 호

###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디자인”이란 충주시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한 계획 및 사업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개발 등의 행위 시 따라야 할 지침을 말한다.
4. “경관 체크리스트”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제3조 중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없다면 이 조례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경관계획과”를 “경관계획,”로, “같다)”를 “같다), 공공디자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추진”을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을 “대해서는 제안자에게”로, “없는 한”을 “없다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재자”를 “주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 또는”을 “서면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재자·발표자”를 “주관자·발표자”로,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등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를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구릉지”를 “언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발생하는”을 “발생되었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0명 이상 20명”을 “5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없는 경우”를 각각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등에게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관협정의 내용은 제27조에 의해 작성된 해당지역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6조의2 중 “필요한”을 “필요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작성비
2. 전문가 자문비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4. 경관협정운영회 운영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제17조 중 “기능을”을 “기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개발행위(건축허가 대상 중 신축건축물이거나 바닥면적 660㎡이상인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20조제3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관협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이외의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건축신고 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신고 전에 경관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심의 및 자문 의제)”를 “(심의 및 자문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아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9조에 따른 심의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실시할 경우, 제25조에 의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 및 자문하여야 한다. 단,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 ②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을 마친 각 사업은 심의(자문)결과 반영여부를 별표3의 서식에 의거 인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 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심의와 제20조에 따른 자문 및 협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
  3.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 ② 심의 및 자문신청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 완료 후,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안 완료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4. 건축허가 등(승인, 인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 신청 이전

제21조의3(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2.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3.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제1항 후단 중 “이경우”를 “이때”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할 때에는 그 렇지 않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경우”를 “때”로, “없는 한”을 “없다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도시경관디자인상의 시상 등)”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경관협정 등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③ ①항과 ②항에 의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공모)”를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대상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협의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심의 및 자문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에의 적용)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실시하거나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한다.

제6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경관관리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① 경관관리 가이드

라인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 기타 해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센티브
- ② ①항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항목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정한다.
- ③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보칙

제29조(도시경관 및 디자인상의 시상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및 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 향상이 인정되는 마을경관, 건축물, 시설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경관 및 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 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공모) ①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경관체크리스트(제6장 관련)

<b>1. 사업 개요</b>						
사업명						
주소						
사업규모 (해당사항 기입)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최고높이	m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층	
시설물 종류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도시구조물 <input type="checkbox"/> 가로시설물 <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물					
건축물 용도	(층별로 기입할 것)					
<b>2. 도시계획현황</b>						
용도지역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공업지역 <input type="checkbox"/> 녹지지역)					
	<input type="checkbox"/> 관리지역					
	<input type="checkbox"/> 농림지역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input type="checkbox"/> 미관지구	<input type="checkbox"/> 경관지구	<input type="checkbox"/>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input type="checkbox"/> 수립지역	<input type="checkbox"/> 미수립지역				
기타사항	(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					
<b>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b>						
중점관리구역	<input type="checkbox"/> 산지면					
	<input type="checkbox"/> 강, 호수 하천변 ( <input type="checkbox"/> 도심형, <input type="checkbox"/> 도심외곽형)					
	<input type="checkbox"/> 주요 가로변 ( <input type="checkbox"/> 도심지내, <input type="checkbox"/> 도심외곽가로)					
일반관리구역	<input type="checkbox"/> 문화재주변					
	<b>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b>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					
	주변현황도	<input type="checkbox"/>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현황사진	<input type="checkbox"/>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배차도	<input type="checkbox"/>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입면도	<input type="checkbox"/>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평면도	<input type="checkbox"/> 기준층 <input type="checkbox"/> 지붕층					
단면도	<input type="checkbox"/>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옥외광고물도면	<input type="checkbox"/>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기타계획도면	<input type="checkbox"/>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자가체크리스트	<input type="checkbox"/> 체크완료할 것					
심의서류 1식	<input type="checkbox"/>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사업전후	<input type="checkbox"/> 주간(인접건축물포함) <input type="checkbox"/>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시뮬레이션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b>5. 체크결과</b>						
구분	종합	해당 항목수	준수 항 목수	필수항목부분		
				준수율(%)	필수항목수	준수항목수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가로						
기타						
*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						

[별표 3]

###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의견 조치계획

□ 사업명 :

자문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경관협정 목적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협정체결 구성원수			
유효기간			

「경관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공공디자인</u> ” 이란 충주시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공간	1. “ <u>공공디자인</u> ” 이란 충주시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한 계획 및 사업행위를 말한다.
· 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및 행위	
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 <u>도시경관대상 시설물</u> ” 이란 별표의 시설물을 말한다.	2. ----- - 별표 1-----.
<신 설>	3. “ <u>경관관리 가이드라인</u> ” 이란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개발 등의 행위 시 따라야할 지침을 말한다.
<신 설>	4. “ <u>경관 체크리스트</u> ”란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현 행	개 정 안
<p>③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u>주재자를</u>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u>서면 또는</u>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공청회의 <u>주재자 · 발표자</u>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p>	<p>③ ----- -----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 ----- ----- ----- 없다면 -----.</p> <p>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 ----- 주관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서면이나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주관자 · 발표자 ----- ----- ----- 등에게 예산의 범위 ----- ----- -----.</p>

현 행	개 정 안
하여 <u>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u> <u>지 아니하다.</u>	<u>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u>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 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요 지형, 산림, <u>구릉지</u> 등 산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 <u>언덕</u>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u>별표</u> 의 도시경관대상 시설물 의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5. <u>별표</u> 1-----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u>발생하는</u> 때에는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발생되었을</u> - ----- -----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0명 이상 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 4. (생략)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는 경우</u> 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는 경우</u> 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 8. (생략)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 ----- ----- ----.  1. ----- ----- <u>5명 이상</u> <u>15명</u> ----- --.  2. ~ 4. (현행과 같음)  5. ----- ----- <u>없을 때</u> -- ----- ----- ----- <u>없을 때</u> -- ----- ----.  6. ~ 8. (현행과 같음)  ② ----- -- 등에게 「 <u>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 」----- ----- <u>범위</u> -- ----- . -- ----- <u>관련하</u>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제16조의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u>필요한</u>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 지원) ----- ----- <u>필요한</u> <u>다</u> <u>음 각 호</u> ----- ----- -.
<u>&lt;신 설&gt;</u>	1.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작성비
<u>&lt;신 설&gt;</u>	2. 전문가 자문비
<u>&lt;신 설&gt;</u>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u>&lt;신 설&gt;</u>	4. 경관협정운영회 운영비
<u>&lt;신 설&gt;</u>	5.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u>기능을</u>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 ----- -- <u>기능은</u> ----- -----.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 ----- -----.

현 행	개 정 안
1.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1.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 중점관리구역 내의 개발행위 (건축허가 대상 중 신축건축 물이거나 바닥면적 660m <sup>2</sup> 이상 인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별표</u> 의 도시경관대상 시설물 의 경관, 디자인,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 <u>별표 1</u> ----- ----- -----
4. ~ 6. (생 략)  <u>&lt;신 설&gt;</u>	4.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경관협의) 경관위원회 의 심의 및 자문대상 이외의 미 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 관리구역 내의 건축신고 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 용하여 신고 전에 경관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받은 사항	제21조(심의 및 자문 기준) ① 제 19조에 따른 심의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실시할 경우, 제25 조에 의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을 기준으로 심의 및 자문하여 야한다. 단, 해당지역에 경관관 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현 행	개 정 안
2.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 항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참 고할 수 있다.
3.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 장식의설치조례」에 따른 미 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 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 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을 마 친 각 사업은 심의(자문)결과 반영여부를 별표3의 서식에 의 거 인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 야한다.
<신 설>	제21조의2(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 신청) ① 제19조 에 따른 심의와 제20조에 따른 자문 및 협의를 신청할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한다.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현 행	개 정 안
	<p><u>서[별지 제6호 서식]</u></p> <p><u>2.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u></p> <p><u>3.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u></p> <p><u>② 심의 및 자문신청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u></p> <p><u>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 완료 후,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안 완료 이전</u></p> <p><u>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u></p> <p><u>4. 건축허가 등(승인, 인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 신청 이전</u></p>
<u>&lt;신 설&gt;</u>	<p><u>제21조의3(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u></p> <p><u>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u></p> <p><u>2.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u></p>

현 행	개 정 안
	<u>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u>
	<u>3.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u>
	<u>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u>
	<u>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p>제22조(소위원회) ① ----- ----- ----- -----. -----. 이때 ----- ----- ----- -----.</p>
제2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p>제23조(수당 등) ----- -----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 -----. 다만, 공무원</p>

현 행	개 정 안
<p>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4. 공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li> <li>5. (생략)</li> </ol>	<p>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없을 때 ----- -----. 4. ----- ----- ----- ----- ----- ----- 그 밖의 ----- ----- 때----- ----- ----- 없다면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6. 공동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련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u>안 된다.</u></p> <p>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6. ----- ----- ----- <u>안된다.</u></p> <p>② ----- <u>등에</u> ----- ----- ---.</p>
제6장 <u>보착</u>	제6장 <u>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u>
<p>제25조(도시경관디자인상의 시상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미적 감각 및 예술성이 특히 빼어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p>	<p>제25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주민은 경관협정 등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수립 할 수 있다.</p> <p>③ ①항과 ②항에 의해 경관관</p>

현 행	개 정 안
<p>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6조(공모) ①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p> <p>②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대상 ·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6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대상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p> <p>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협의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심의 및 자문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예의 적용)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p>

현 행	개 정 안
	<p>을 실시하거나 경관협정을 체결 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한다.</p> <p><u>&lt;신 설&gt;</u></p> <p>제28조(경관관리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①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공</li> <li>2. 기타 해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센티브</li> </ol> <p>② ①항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항목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정한다.</p> <p>③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u>&lt;신 설&gt;</u>	<u>제7장 보칙</u>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도시경관 및 디자인상의 시상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및 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경관 향상이 인정되는 마을경관, 건축물, 시설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경관 및 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p>제30조(공모) ①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p> <p>②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의 공</p>

현 행	개 정 안
	<p>모 대상 ·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u>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u>  <u>으로 정한다.</u></p>

## 관계법령

### □ 경관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 경관법 시행령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